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지원 대상인 자동차안전기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등).
-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4항 및 제34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을 개정함(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II. 검토의견

1.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등록취소를 기준 완화 대상에서 제외

(안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개정안은 2015년 법률 개정 전 등록기준(전시시설 연면적 330㎡ 이상)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강 또는 경영상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등록취소가 있는 후에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법률 개정 후 등록기준(660㎡ 이상)이 아닌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다만, ‘폐업’과 달리 ‘등록취소’에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따른 경우도 포함되는바(현행법 제66조제1항¹⁾),

1)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등록기준을 종전 규정으로 완화해주는 것은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제도의 취지 및 등록취소 관련 규정 체계 등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등록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제66조제1항제1호),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제12호라목) 및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제15호) 등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를 기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완화 대상 사업자 등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u>적용례</u>)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u>적용례 등</u>) ----- -----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마.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바.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아.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 생략)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 생략)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 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 을 하고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 ----- ----- 위하여 「건축법」 제 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 ----- 한 자가 자동 차매매업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제6 6조제1항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라 등 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 자동차매매업 을 등록하는 ----- ----- ----- .
--	--

2.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29조제1항)

개정안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관한 현행 제29조²⁾제1항의
‘장치’에 ‘페달조작방지장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 제29
조²⁾제1항³⁾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대상에 ‘페달

- 2)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오조작방지장치'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페달오조작방지'장치'도 당연히 현행법상 '장치'의 일종이므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이미 연구·개발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⁴⁾, 이를 개정안과 같이 연구·개발 비용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대통령령⁵⁾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안 제29조제1항에서 '장치'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포함한 다'고 명시한 괄호 부분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문구를 정리하였음.

-
- 3)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4)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페달오조작방지 및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R&D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임(2026년~2029년, 150억원 규모).
- 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 창닫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 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u>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포함 한다)가</u>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 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 ④ (생 략)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 -- <u>장치가</u> ----- ----- ----- -----.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